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5. 11. .

제안자 : 박세채 의원 외 5인

1. 제안이유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 【별표 16】에 의하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자동차 관련 시설을 주차장, 세차장, 매매장, 정비공장, 운전학원 등의 시설로 하고 있으나 검사장은 제외되어 있음
- 따라서 자동차정비공장에서도 차량검사를 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이용자의 편의 및 계획적인 도시계획 설치 등의 이유로 검사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검사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어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 【별표16】 하목에 「건축법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라목(검사장)을 삽입

3. 참고사항

-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
 -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

구미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6 하목중 “나목”을 “나목, 라목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【별표16】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3조) ※ 시행령 및 도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) 가.~파. 생략 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, <u>나목</u>, 마목, 바목, 사목 및 아목 거.~머. 생략	【별표 16】 ----- ※ ----- ----- 가.~파. 현행과 같음 하. ----- ----- <u>나목, 라목</u>, ----- 거.~머. 현행과 같음

참 고 자 료

□ 구미시도시계획조례

제33조(용도지역·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

【별표16】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3조)

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
가목, 나목, 마목, 바목, 사목 및 아목

□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(용도별 건축물의 종류)

【별표 1】

16. 자동차관련시설(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)

가. 주차장

나. 세차장

다. 폐차장

라. 검사장

마. 매매장

바. 정비공장

사. 운전학원.정비학원

아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.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
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